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0.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264호로 2020년 10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회계와 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유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 계정구분 (안 제1조 ~ 제2조)

나.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 (안 제3조 ~ 제6조)

다. 기금운용심의 (안 제7조)

라. 회계공무원, 시행규칙, 존속기한 등 (안 제8조 ~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2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2020. 9. 3. ~ 9. 2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등에 따라 회계와 기금 상호간,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 등에서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있었음.

- 이를 보완하여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 한도를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하고,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20. 9. 10.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각 계정별 재원과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이자율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통합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위원회”를 두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구 지방보조금심의회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유사중복위원회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두었음.

○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가 있고, 용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각 회계별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 하도록 하여 세수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 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